

# 대출거래 추가약정서 (기존주택 처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)

##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앞

채무자 본인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(이하 '은행'이라 합니다)와 약정한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

### 제 1 조 목적

이 약정서는 1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, 이하 "주택" 이라 합니다.)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<sup>주</sup>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채무자가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(이하 '규제지역') 또는 수도권 소재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제 4 조에 따라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가로 구입하는 주택 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 거래를 하기 위해 은행과 체결하는 추가 약정입니다.

주 1) "세대"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,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(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외국인 및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)상에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,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.

### 제 2 조 처분대상 주택

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현재 보유 하고 있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종류	소유자	주소

### 제 3 조 구입대상 주택

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구입하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종류	소유자	주소

### 제 4 조 처분대상 주택 처분의무

-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대출실행일(중도금 이주비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)로부터 제 3 조의 구입대상 주택이 규제지역 및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제 2 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(명목이전 완료)해야 합니다.
-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제 2 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(명목이전 완료)한 경우에는 은행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
### 제 5 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

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은행연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 제 4 항 제 2 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, 그에 따라 본 대출을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.

- 제 4 조에 따라 대출실행일(중도금·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)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 2 조의 처분대상 주택의 처분(명목이전 완료)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
-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 2 조의 처분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

### 제 6 조 여신거래 약정 위반

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대출 완제 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, 제공일로부터 향후 3년간 금융기관<sup>주2)</sup> 주택 관련 대출<sup>주3)</sup>이 제한됩니다.

주 2)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25 조 제 2 항 제 1 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

주 3) 「은행업감독규정」 <별표 6> 제 1 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

- 제 4 조에 따라 대출실행일(중도금·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)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 2 조의 처분대상 주택의 처분(명의이전 완료)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
- 제 2 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(명의이전 완료)하지 않은 채 본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

채무자 성명	(인)
주소	년 월 일

kakaobank

2025.07.31. 시행

**「대출거래 추가약정서(기존주택 처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)」 개정 신·구조문 대비표**

개 정 전	개 정 후	비 고
<b>대출거래 추가약정서</b> <b>(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)</b>	<b>대출거래 추가약정서</b> <b>(기존주택 처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)</b>	추가약정서 명칭 변경
<b>제 1 조 목적</b> 이 약정서는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, 이하 "주택"이라 합니다.)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<sup>주 1)</sup> 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채무자가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(이하 '규제지역') 소재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제 4 조에 따라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가로 구입하는 주택 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 거래를 하기 위해 은행과 체결하는 추가 약정입니다. 주 1) "세대"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,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(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외국인 및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) 상에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,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.	<b>제 1 조 목적</b> 이 약정서는 1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, 이하 "주택"이라 합니다.)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<sup>주 1)</sup> 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채무자가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(이하 '규제지역') 또는 수도권 소재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제 4 조에 따라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가로 구입하는 주택 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 거래를 하기 위해 은행과 체결하는 추가 약정입니다. 주 1) "세대"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,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(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외국인 및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)상에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,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.	추가약정 대상자 변경
<b>제 2 조 ~ 제 3 조 (생략)</b>	<b>제 2 조 ~ 제 3 조 (현행과 같음)</b>	
<b>제 4 조 처분대상 주택 처분의무</b> ①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대출실행일(중도금·이주비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)로부터 제 3 조의 구입대상 주택이 <u>규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 2년(이하 '정해진 기간')</u> 이내에 제 2 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(명의이전 완료)해야 합니다. ②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제 2 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(명의이전 완료)한 경우에는 <u>정해진 기간 이내에</u> 은행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	<b>제 4 조 처분대상 주택 처분의무</b> ①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대출실행일(중도금 이주비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)로부터 제 3 조의 구입대상 주택이 <u>규제지역 및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 6개월</u> 이내에 제 2 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(명의이전 완료)해야 합니다. ②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제 2 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(명의이전 완료)한 경우에는 은행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	대상자 변경 및 처분 기한 변경

<p><b>제 5 조 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</b></p> <p>다음 각 호의 사유가 <u>발생한 경우</u>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 제 4 항 제 2 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, 그에 따라 본 대출을 <u>즉시</u>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.</p> <p>① 제 4 조에 따라 대출실행일(중도금·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)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 2 조의 처분대상 주택의 처분(명의이전 완료)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</p> <p>②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 2 조의 처분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</p>	<p><b>제 5 조 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</b></p> <p>다음 각 호의 사유 <u>발생 시</u>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 제 4 항 제 2 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, 그에 따라 본 대출을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.</p> <p>1. 제 4 조에 따라 대출실행일(중도금·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)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 2 조의 처분대상 주택의 처분(명의이전 완료)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</p> <p>2.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 2 조의 처분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</p>	<p>문구 수정</p>
<p><b>제 6 조 (생략)</b></p>	<p><b>제 6 조 (현행과 같음)</b></p>	